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2
----------	-----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2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동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소방현장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 원: 4,438명 → 4,668명 (+230명)
- 집행기관의 정원: 1,801명 → 1,805명 (+ 4명)
- 소방공무원 정원: 2,516명 → 2,728명 (+212명)
- 교육공무원 정원: 43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 정원: 78명 → 76명 (△2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6명(신설)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정무직: 1명 → 3명 (+ 2명)
- 일반직: 1,639명 → 1,655명 (+ 16명)
 - ▶ 4급 (+1), 5급 이하 (+15)
- 소방직: 2,516명 → 2,728명 (+212명)
 - ▶ 소방령이하 (+212명)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 소방력 기준대비 ‘현장부족인력 연간 보강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9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2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소방현장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 원: 4,438명 → 4,668명 (+230명)
 - 집행기관의 정원: 1,801명 → 1,805명 (+ 4명)
 - 소방공무원 정원: 2,516명 → 2,728명 (+212명)
 - 교육공무원 정원: 43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처 정원: 78명 → 76명 (△2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6명(신설)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정무직: 1명 → 3명 (+ 2명)
 - 일반직: 1,639명 → 1,655명 (+ 16명)
 - ▶ 4급 (+1), 5급 이하 (+15)
 - 소방직: 2,516명 → 2,728명 (+212명)
 - ▶ 소방령이하 (+212명)

3. 의안전문: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6. 비용추계서: 붙임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438명”을 “4,66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01명”을 “1,80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516명”을 “2,7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78명”을 “76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6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4,668	-					
정무직 계	3	1					2
도지사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계	1,655	-					
1~2급	1					1	
2~3급	2	1	1				
3급	12	10		1		1	
3~4급	2	2					
4급	76	50	8	5	7	5	1
5급이하 소계	1,547	-					
전문경력관 소계	15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97	-					
연구관	33			31	2		
연구사	164	-					
지도직 계	30	-					
지도관	6			6			
지도사	24	-					
소방직 계	2,728	-					
소방정	17	5		12			
소방령이하	2,711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1			31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43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01명</u></p> <p>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516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8명</p> <p><u><신설></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4,668명</u>-----</p> <p>8명-----</p> <p>-. 1. ----- <u>1,805명</u></p> <p>2. ----- ----- <u>2,728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u>76명</u></p> <p>5. <u>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6명</u></p>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개정사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소방현장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정원조정 내역 (안 제2조)
 - 총정원 : 4,438명 → 4,668명(+230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증원 229명(일반공무원 17명, 소방공무원 212명)

※ 인건비 지원 대상자 제외(일반공무원 1명): 수계기금 100%

나. 추 계 결 과 : 인건비 90,144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90,144,299	12,631,938	19,118,439	19,290,505	19,464,120	19,639,297
인건비(일반공무원)	6,980,346	978,157	1,480,441	1,493,765	1,507,209	1,520,774
인건비(소방공무원)	83,163,953	11,653,781	17,637,998	17,796,740	17,956,911	18,118,523

※ 매년 임금인상률 0.9%(예상치) 적용 계산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 ③ (생략)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 5.>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총계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소방 준감 이하	63,888	7,438	3,631	2,785	3,288	1,568	1,587	1,385	550	10,837	4,348	2,728	4,099	3,330	4,450	5,484	5,222	1,1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① ~ ③ (생략)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